

주주귀하

주식회사 벡트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9월 28일(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역삼동, 벡트빌딩)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연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수연	1989.09.07	現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前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이사회	-	-	-	-	-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최병욱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 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최병욱	1963.02.13	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前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Senior Fellow 前 (주)임베디드웹 대표이사	이사회	-	-	-	-	-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찬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 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박찬희	1970.12.26	前 윈텍 대표이사 前 빛과전자 대표이사	이사회	-	-	-	-	-

○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고경철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 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고경철	1959.12.08	前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 공학부 연구교수 前 선문대학교 교수 前 LG전자 종합기술원 실장	이사회	-	-	-	-	-

○ 제2-5호 의안 : 독립이사 조형석 선임의 건 사업목적 추가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조형석	1944.10.08	前 포항제철중앙연구소교수 前 (日)리츠메이칸대학 교수 前 (獨)IPA 교수 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사회	-	-	-	-	-

③ 제 3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 이석웅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석웅	1965.06.25	現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서우/수목 대 표변호사 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 지원장 前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 원 부장판사	이사회	-	-	-	-	-

④ 제4호 의안 :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 승인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는 상장 이후 자본시장 대응,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IR·PR 전략 고도화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문 임원을 신규 영입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회사의 주가 및 기업가치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책임경영 및 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1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것으로,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이사회를 통해 기 부여된 자에 대한 승인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한OO	임원	이사/CCO	보통주	5,000주
총(1)명	-	-	보통주	총(5,000)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부여방법	신주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5,000주
부여절차	본 건은 상법 제542조의3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행사가격	1주당 2,164원
행사기간	2028년 4월 20일부터 2033년 4월 19일까지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 행사 시점에도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경우 행사 가능

구 분	내 용
기타 조건의 개요	주가 성과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유지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따름

※ 당사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없으나, 본 건 대상자는 미등기 임원이며 피용자에 해당하여 부여 가능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3,707,500주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사회 결의 시 3% 범위 내)	보통주	2,056,125주	2,051,125주

- **최근 2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6년	2026.04.20	1	보통주	5,000주	-	-	2,051,125주
2025년	-	-	-	-	-	-	-
계	-	총(1)명	-	총(5,000)주	총(-)주	총(-)주	총(2,051,125)주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 하여 조치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9월 18일 09시 ~ 2026년 09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참고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전자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합니다.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1일

주식회사 벡 트

대표이사 유 창 수 [직인생략]

[별첨] 정관 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u>벡트</u> 라고 부른다. 또한, 영문 회사명으로는 <u>VECT</u> Co., Ltd. (약호 <u>VECT</u>) 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u>벡트로보틱스</u> 라고 부른다. 또한, 영문회사명으로는 <u>VECT Robotics</u> Co., Ltd. (약호 <u>VECT Robotics</u>) 라 표기한다.	상호명 변경의 건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u>인터넷홈페이지</u> (https://vect.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	
제2조(목적) 1~25. (생략) <u>26. 로봇,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u> <u>27.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u> 28. 산업용, 연구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 개발 제작, 임대, 가공 및 용역업 <u>29. 로봇과 관련한 교육 및 교육서비스 사업</u> 30.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31.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 정비, 서비스 및 도,소매업 <u>32. 위 각항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u>	제2조(목적) 1~25. (좌동) <u>26. 로봇, 로봇 부품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제조용·국방용·특수목적용 로봇 시스템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u> <u>27. 로봇 자동화 기계·설비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시스템 통합(SI),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업</u> 28. (좌동) <u>29. 인공지능(AI) 및 로봇 관련 기술 자문, 컨설팅, 교육,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업</u> 30. (좌동) 31. (좌동) <u>32.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개발업</u> <u>33. 로봇 제어용 소프트웨어 및 운영 플랫폼 개발업</u> <u>34. 로봇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및 가상환경 기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업</u> <u>35.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지식그래프 및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시스템 개발업</u> <u>36.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업</u> <u>37. 위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국내외 수출입업 및 기타 부대사업 일체</u>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이사(사장)</u> 가 소집한다. 2. <u>대표이사(사장)</u> 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	제22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이사</u> 가 소집한다. <u>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u> 2. <u>대표이사</u> 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대표이사 관련 조문 정비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제25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사장)</u> 로 한다. 2. <u>대표이사(사장)</u> 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 로 한다. <u>다만, 대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u> 2. <u>대표이사</u> 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2. 대표이사가 <u>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u>	제36조(이사의 직무) 1. (좌동) 2. 대표이사가 <u>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u>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1. <u>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u> 2. <u>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한다.</u> 3. <u>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1. <u>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u> 2. <u>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다.</u> 3. <u>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한다.</u> 4. <u>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제39조의2(위원회) 1. <u>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u> 1) <u>감사위원회 <신설 2025.3.25></u> 2) <u>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025.3.25.></u> 3) <u>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u> 2. <u>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3. <u>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39조의2 <u><삭제 2026.9.28></u>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의 건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1~2. (생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u>감사위원회</u>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u>감사위원회</u>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1~2. (좌동)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u>감사</u>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u>감사</u>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u>감사</u>·<u>원인</u>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생략)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u>경우</u>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9. (생략)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u>감사</u>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좌동)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u>경우</u>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9. (좌동)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생략)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u>소집한다</u>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각각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u>감사위원</u>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u>감사위원</u>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생략)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좌동)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u>소집한다</u>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각각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u>감사</u>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u>감사</u>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좌동)	
제39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생략)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u>홀수</u> 전에 각 이사 및 <u>감사위원회</u>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생략) 4. 이사 및 <u>감사위원회</u>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6. (생략)	제39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좌동)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u>홀수</u> 전에 각 이사 및 <u>감사</u>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좌동) 4. 이사 및 <u>감사</u>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6. (좌동)	
제44조(감사위원회)	제44조(감사)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기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삭제 <2025.03.25.>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員數)를 결(缺)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감사의 직무) 삭제 <2025.03.25.>	제4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감사록) 삭제 <2025.03.25.>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2025.03.25.>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생략)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위원회</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감사위원회</u>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생략) 6. <u>대표이사(사장)</u>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u>감사위원회</u>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좌동)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감사</u>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좌동) 6. <u>대표이사</u>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u>감사 의견</u>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위원회</u>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u>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u>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u>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2.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의 건
제33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사 <u>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u>	제33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를</u>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u>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 및 주</u> 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u>총주주의 이익을</u>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이사는 <u>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u>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6. (생략) 7.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u>종류 주식</u> 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8~12. (생략)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6. (좌동) 7.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u>종류주식</u> 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8~12. (좌동)	오탈자 수정의 건
제3장 사채	제3장 사채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정관은 2026년 09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명시건의 건